

영등포구의회
제157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0. 12. 3.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李 憲 永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4호로 2010년 11월 1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정(제안)이유

이 조례안은 영등포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하여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 경영안정, 금융지원, 정보공유 등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 목적(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5조)

1) 경영상담, 교육실시, 마케팅 등

2) 창업, 경영자금 융자에 대한 특별보증지원

마. 소상공인지원위원회 구성, 기능,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5조,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0조의6, 제11조,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지방자치법」 제8조~제9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 또는 10인 미만(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인 사업자를 말함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관내 총 사업체 39,516개 중 35,690개(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영세사업자인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영상담, 자문, 교육, 홍보·마케팅, 정보제공 등 지원사업과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특별보증제도 등과 같은 재정적 지원사업 등으로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2009년 4월 대한상공회의소 자료를 인용하면 소상공인 84.8%가 경영여건이 어렵다고 응답했고, 정부에서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할 과제로 ‘자금 및 보증지원 확대’가 55.4%로 ‘세제지원’이나 ‘규제개선’보다 많았음
- 하지만 59.6%의 소상공인들이 정부지원제도를 모르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어 소상공인 지원조례도 중요하지만 각종 지원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도 중요하며 조례 제정 시 상위법령에는 위배되지 않음

관 계 법 령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5조(상시 근로자)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②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한 기업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인원

가. 창업하거나 합병한 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나. 창업하거나 합병한 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 창업일이나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써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0조의6(조세에 대한 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기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진흥원의 장, 「신용보증기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개정 2006.3.23>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2. 제1호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

■ 지방자치법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①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婦女)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소류지(소유지)·보(보)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개수)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 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 6.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 나. 화재예방과 소방